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기체계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 추가, 국산화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의 분류기준 추가(안 제2조)

무기체계의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기준이 필요

나.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 요소 개념 반영(안 제28조)

총수명주기관리 제도 재정립에 따라 획득단계에 한정된 개념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한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국산화부품 방산물자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산화 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제도개선 등(안 제59조)

- 1)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물품의 유·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인 물품의 무상 양도 근거 마련
- 2)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수출 등의 사유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해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3) 현행법에 “양도”가 “양여”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마.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 명확화(안 제66조)

군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행위 등 현재 허가 제외 중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방산업체 매매 등을 승인받거나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경우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바. 원자재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품원에 법령상 위탁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우주감시 등 우주무기체계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기술교범 등을 포함하여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가동률과 수명주기비용 등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제반 활동 등 통합체계지원요소

제40조제1항 단서 중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의 원활”을 “원활”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개발완료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제59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5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를 “양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대부·사용허가”를 “양여·대부·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하는”을 “양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받고자”를 “양여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항제5호를 위한 물품으로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⑨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또는 물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방산시설(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66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조업허가”를 “제조업허가(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양도·양수허가(양도·양수허가)”를 “양도·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장허가, 운반허가(운반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허가(폐기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할)”을 “양도·양수, 저장, 운반, 폐기를 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군용총포등을 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군용총포등”을 “군용총포등(제71조제1항제1의2호 및 제2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관리하는 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사용허가”를 “사용허가(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 내에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경우(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총포등의 경우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양 미만의 군용총포등의 경우
3.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각 군이 군용총포등에 관하여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⑦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방산업체에 대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 매매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통보가 있을 때에 취득 범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용총포등의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허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⑧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총포등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포괄 양수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양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허가에 따른 종전 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제2항제8호 중 “종류 및 수량의 확인”을 “종류, 수량 및 규격의 확인과 품질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8. (생 략)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u> 9. <u>우주감시 등 우주무기체계</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방위사업청장 및 소요와 관련된 군,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제1호 나목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획득된 무기체계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종합군수지원 요소

② ~ ④ (생략)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수
리부속품 및 기술교범 등을
포함하여 무기체계의 전체 수
명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무기체계 가동률과
수명주기비용 등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제반 활동 등 통합
체계지원요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제59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 ③ (생략)

① -----

원활-----
-----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

-----.

1.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개발완료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
기 및 물품으로서 유상 또는 무
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⑤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생략)

<신설>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
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도·대부·사용허
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

⑤ -----
----- 양여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항제5호를 위한 물품으로
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
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⑥ -----

----- 양여 · 대부 · 사용허가 -----

-----.

1. -----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2. 3. (생략)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⑧ (생략)

<신설>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 양여하는 -----

2. 3. (현행과 같음)

⑦-----

----- 양여받고자 -----

-----.

1. 2.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또는 물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방산시설(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 외에 군용총포등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 (생략)

<신설>

7. 다음 각 목 외에 군용총포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7. -----

가. ----- 제조업허가(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출허가, 양
도·양수허가(양도·양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저장허가, 운반허
가(운반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폐기허가(폐기허
가를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는 경우

8.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
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
용총포등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 외에 군용총포등
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경
우

양도
·양수허가, 저장허가, 운
반허가, 폐기허가(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 및 제5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
가--- 양도·양수, 저장,
운반, 폐기를 할 -----

8. -----

경우(군용총포등을 군부대 탄
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
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9. -----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
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 내에서 군용
총포등을 운반하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u>군용총포등</u>을 운반하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양 미만의 <u>군용총포등</u>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 외에 <u>군용총포등</u>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u>군용총포등</u>을 제4호에 따라 <u>사용허가</u>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는 경우	<u>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u> 나. ----- ---- <u>군용총포등(제71조제1항제1의2호 및 제2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관리하는 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u>----- - <삭 제> 10. ----- ----- 가. ----- ----- ----- <u>사용허가(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	---

<삭 제>

②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총포등의 경우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양미만의 군용총포등의 경우

3.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 제6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각 군이 군용총포등에 관하여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방

<신 설>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생 략)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산업체에 대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 매매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통보가 있을 때에 취득 범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용총포등의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허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⑧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총포등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포괄 양수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양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허가에 따른 종전 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생략) 8.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 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 재의 <u>종류 및 수량의 확인</u>	1. ~ 7. (현행과 같음) 8. ----- ----- -- <u>종류, 수량 및 규격의 확인</u> <u>과 품질검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